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90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786호)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808호)
-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657호)

2019. 3.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희석

IV. 김관영의원 대표발의안(18657)	26
1. 제안경위	26
2. 제안이유	26
3. 주요내용	27
4. 검토의견	27
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음주 운전시동방지장치 설치의무 부과(안 제55조의3 신설)	27

IV. 김관영의원 대표발의안(18657)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관영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 : 2019. 2. 15.

다. 회부일 : 2019. 2. 18.

2. 제안이유

매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나. 이를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 제1호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음주운전시동방지장치 설치의무 부과(안 제5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5조의3(음주시동방지장치의 장착)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p>

<p>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 <신설></p> <p>2. ~ 5. (생략)</p>	<p><u>운전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음주시동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63조(벌칙) ----- ----- -----.</p> <p>1. (현행과 같음) 1의2. <u>제55조의3을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u></p> <p>2. ~ 5. (현행과 같음)</p>
---	--

음주시동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치를 넘는 경우에는 엔진을 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하며, 미국·캐나다·프랑스 등에서 음주운전 방지 시책에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짐.

개정안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재범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이력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를 재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정 행위자에 대한 의무부과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의 추진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를 재발급받은 자와 같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조치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 범칙 행위, 운전면허의 발급·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소관법률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면허취소 처분의 권한을 보유하고 적발이력을 관리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시동방지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 달성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자 등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8.11.20.)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경찰청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의 성과물과 2019년 개최 예정인 관련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

【표 11】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제출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내용	소관상임위
20058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부터 일정 기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행정안전위
2006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행정안전위

담당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노
연락처	02-788-2230 (FAX 02-788-3366)
이메일	yoonsn@assembly.go.kr